

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「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」,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이 적용됩니다.

서비스 기본정보

서비스 개요	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및 카드 정보를 일괄 조회하고,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 이전 및 해지,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"계좌지급정지"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
서비스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만 19 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중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정한 일정 잔고 이하의 비활동성 계좌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비활동성 계좌 : 최종입출금일(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)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 년을 초과한 계좌 (단, 한도대출약정계좌(마이뉴스통장), 세금우대계좌, 청약관련계좌, 당좌예금 등의 계좌는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음)
서비스 이용 채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(www.payinfo.or.kr) 또는 애플리케이션창구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금융회사의 비대면 채널(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)
조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,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카드 정보를 조회해당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없이 전 금융회사에 개설된 비활동성 계좌 정보를 조회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※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 및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거래가 제한되도록 요청한 계좌는 조회되지 않음
잔고 이전 및 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정의 :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,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잔고 이전 및 해지할 경우,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와 현금카드를 해지할 수 있음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"소액비활동성계좌"에 한하여 잔고이전 및 해지 가능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이용방법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,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 이전 및 해지 가능통장의 제시, 인감의 날인,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고객의 신청만으로 계좌의 잔고 이전 및 해지 가능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※ 지급정지, 압류가 등록된 계좌 등 일부 계좌의 경우 잔고 이전 및 해지 불가
계좌지급정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조회되는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한하여 지급정지 신청 가능계좌지급정지 시 해당 계좌에 연결된 직불/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됨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/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단, 동 서비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효력과는 무관함계좌지급정지의 해제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, 금융회사마다 해제 절차는 다를 수 있음
서비스 이용 수수료	해지원리금을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 시, 해지계좌 금융회사에서 인터넷뱅킹 등에 고시한 이용수수료가 적용됨



기타 유의사항

-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(기관)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, 이용 또는 제공(전달)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.
-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(기관)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은행은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.

서비스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(☎1599-3333)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(www.kakaobank.com)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서비스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<https://www.fcsc.kr>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